발주서

P/O No: **PO241107021**

발 주 일: 2024. 11. 07

■ 프로젝트	롯데제과 김천공장 냉동자동창고 구축				
■ 발주명	롯데제과 김천공장 냉동자동창고 구축_네트워크 설치_제어부 사외용역				
■ 공급사	(주)아이에스엘				
■ 발주금액	일금 일천오백만 원정 (15,000,000) (VAT 별도)				
■ 계약기간	2024. 11. 07 ~ 2025. 05. 31				

[대금지급조건]				[이행보증]	
구 분	대금지급금액	비율(%)	지급기준/시점	구분	보증율
선급금	3,000,000	20	계약후	선급금 보증율	선급금전액
중도금1	10,500,000	70	기성지급	계약이행 보증율	10%
잔금	1,500,000	10	기성지급	하자이행 보증율	10%
결제수단	마감 후 60일 동반성장론			하자이행보증기간	PJT완료후 12개월

* Remark

- 선급금, 중도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 발주자와 공급자는 별도로 체결한 기본계약서와 본 발주서의 부속조건인 별첨의 '기본조건' 및 비밀유지조건'을 준수하며, 전자계약을 통해 양사가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보관한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가 서울보증보험에 제공된다.
- 지연이자요율: 연 6% (대금지급, 반환요율) / 연 10% (손해배상 지연)
- ※ 하도급법령상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공정위의 고시 지연이자율 우선 적용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기술자료(결과물 혹은 목적물 등)의 경우, 그 대가(금액) 지급이 완료되면양사간 체결한 하도급기본계약의(목적물 소유권 이전)조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권리가 귀속됨.

'발주자'와 '공급자'는 본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 [Buyer's Name & Address]

업체명: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9길 25

대표자: 김영민 전자서명완료

■ 공급자 [Supplier's Name & Address]

업체명: (주)아이에스엘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태장

동, 디지털엠파이어2) 101-608

대표자: 오정석 전자서명완료

Contract NO: CT20241107003

[기본조건]

제 1조 [사급자재]

기본계약 제 11조, 12조 및 별도 사급명세서 또는 시방서 내용에 준한다(단, 사급 자재가 없는 경우 생략한다)

제 2조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 1.5/1000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 3조 [품질관리]

- 1. "공급자는"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설계,생산,판매등의 전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 운영하여 기본계약 제 5조, 7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며 또한 "발주자"가 요구 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하여야 한다.
- 2. "공급자"는 목적물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 변경 등의 경우에 발주자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 3. 기타사항은 기본계약 제15조 자가품질검사등에 따른다.

제4조 [계약해제 및 해지]

- 1.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 할 능력이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3. "발주자"또는"공급자"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 신청 등의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본계약 제 5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에 따른다

제5조 [계약일반사항]

본 발주서의 일반사항은 기본계약서의 조건과 별도의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을 통하여 양사간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보관한다.

제6조 [도면관리]

본 발주서에 의해 발주되어 제작 참고한 "발주자"의 제작도면은 잔금 지급시,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도면을 "발주자"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다.

제7조 [제조물책임]

- 1. '공급자'는 '발주자'가 발주한 물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발주자는 공급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제조물 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해야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3. '발주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4. '발주자'와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8조 [안전관리약정]

1. '발주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공급자'에게 '발주자'의 고객사 현장에서 근무(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 할 수 있고, '공급자'는 보험가입 후 '발주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고객사 현장 근무(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외용역 발주(개별계약)내역 상의 노무비에 따른 보험료임을 확인하고, 그 보험료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 2. '공급자'의 근로자가 프로젝트 수행 중, 자신의 고의 또는 부주의, 보호구 미착용, 기타 안전수칙 불이행 등 '공급자' 혹은 '공급자'의 근로자 귀책으로 '공급자'의 근로자나 '발주자' 혹은 '제3자'의 자산이나 물적, 인적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프로젝트의 계속 시공여부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 3. '공급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4. '공급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 및 실행하는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해 실시 및 참여하여야 한다.
- 5. '공급자'는 '공급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6. '공급자' 혹은 '공급자'의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 7. '공급자'는 '발주자'에서 진행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 노사협의체 혹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 8. '공급자' 혹은 '공급자'의 근로자는 작업 시 다음의 안전보건 기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일반 관리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프로젝트 수행 장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 (2) '발주자'의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로 부터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3)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유해·위험작업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단정한 복장 상태로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 2) 고소 작업 관리
 -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하 고소 작업)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2) 고소 작업 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안전망,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작업하여 야 한다.
 - (3) 고소 작업 시 하부 장소에 모든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조치하여야 한다.
- 3) 위험 기계 관리
 - (1)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 장치를 임의 해체하지 아니한다.
 - (2)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 (3) 설비 내부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인터락 Key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4) 장비 작업 관리
 - (1) 크레인,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 등 장비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상주하여야 한다.
 - (2) 크레인,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 등 장비 작업 시 유도자를 지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장비 운전원은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 (3) 크레인,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 등 장비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5) 화기 작업 관리
 - (1) 불티·불꽃 발생 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티·불꽃 비산 방지 조치하여야 한다.
 - (2) 화기 작업 시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용접 \cdot 융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단, 화재감시자는 화기 작업 감시 업무만을전담하여야 한다.
- 6) 전기 안전 관리
 - (1)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2)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 (3) 작업 또는 통행 중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화학물질 취급 관리
 - (1) 화학물질 취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자'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특수건강진단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자'의 근로자에게 배치 전 건강진단 혹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8) 정리 정돈
 - (1) 프로젝트 수행 장소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자재 보관 시 구획 설정을 해야하며, 폐자재는 별도 보관 후 작업 장소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안전기본준수사항]

□ 관리일반

- 1. 현장책임자(안전담당자)는 항시 현장에 상주한다.
- 2. PM의 안전지시에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 3. 신규작업인원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 안전교육, 보고후 지급 등의 안전조치를 받도록 하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 4. 안전사고 발생시는 즉시 PM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복장보호구

- 1.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 2. 고소작업등 필요시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 3. 작업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단정한 복장상태를 유지한다

□ 고소작업

- 1. 고속작업 전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 2. 단독작업을 금하며 안전담당자 입회 하에 작업에 임한다.
- 3. 작업 전 추락재해 예방시설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안전망, 난간, 구명줄 및 승강설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 4. B/T비계는 유공작업발판, 안전난간, 캐스터 및 스토퍼를 설치한다.

□ 위험기계

- 1. 사용 전 PM에게 통보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한다.
- 2. 전기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고, 가스용접기는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작업에 임한다.
- 3. 가스용접기는 전도방치조치를 하고 대차에 실어 사용한다.

□ 크레인작업

- 1. 크레인작업 전 조정면허, 중기보험 및 정기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한다.
- 2.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장치 등의 유무를 점검 받은 후 사용한다.
- 3. 작업 중에는 신호수1인을 지정 배치하고 지정된 신호에 따라 한다.

□ 화기작업방화관리

- 1. 용접, 절단작업시에는 불꽃 비산방지 조치를 한다.
- 2. 화기작업장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인화물이 없도록 한다.
- 3. 가스봄베, 위험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4.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작업중, 보행중 흡연은 금한다.

□ 전기안전

- 1.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반드시 케이블선으로 한다.
- 2. 분전반 이용시에는 규정된 단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접속하여 사용.
- 3. 전선은 반드시 지상으로 이격 하고 피복의 손상유무를 수시 점감함.

□ 정리정돈

- 1.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현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2. 자재, 폐자재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비밀유지조건]

제 1조 [보안책임]

-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비밀을 성실히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 비밀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공급자'는 '공급자'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주자'의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에도 비밀보호 책임자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2조 [비밀]

본 비밀유지조건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공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발주자'의 소유 정보 사항 (각종문서, 도면, 디스켓, USB, 녹음테이프, 사진, 장비, 자재 등)의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것을 말한다

제 3조 [비밀의 유지]

- (1)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문서, 도면 또는 장비, 자재 등(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용역 또는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만약 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누설할 경우에는 본 비밀유지조건에 준하는 서면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 (2) '공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또는 승낙 외에는 '발주자'의 비밀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 내지 기타(이하 '생산된 비밀'이라 칭함)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급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잔금 요청시 하자증권과 함께 제작도면 및 기타 비밀 일체를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4조 [비밀유지조건 효력]

- (1) 본 비밀유지조건의 발효일은 '발주자'와 '공급자' 쌍방이 서명한 날(전자서명포함)로부터 한다. 단, 비밀유지조건의 발효일 이전 쌍방의 합의에 의해 개발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 본 비밀유지조건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 (2) 본 비밀유지조건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 5조 [방문 및 출입통제]

- (1) '공급자'의 연구실/공작실/제조실험실 등에 외래인의 방문에 대하여는 이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발주자'가 제1항의 방문승인을 하는 때에는 방문자에 대한 비밀공개 범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조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 '공급자'는 제1항의 외래인의 방문통제 이외에 '발주자'의 사전 허가없이 소속직원 또는 종사원으로서 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통지의 의무]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본 비밀유지조건에 정한 비밀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본 비밀유지조건의 정한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조 [위촉 및 하청]

- (1) '공급자'는 '발주자'가 위촉한 비밀에 속하는 기술용역 또는 제조를 수행함에 있어 하수급인 에게 이를 위촉 또는 하청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그 위촉 또는 하청의 내용과 사유 및 보안대책(본 비밀유지조건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등을 포함한 사항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전항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하수급인의 비밀유지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8조 [비밀의 공표]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업무 또는 제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을 '발주자'의 비밀사항 및 제품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광고, 신문, 학회지 및 기타의 수단에 의해 공표하거나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 수 있다.

제 9조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공급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비밀이 분실, 파기, 누설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전말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제 10조 [누설 시 처벌]

'공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공여, 증여 및 누설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 18조에 의한 책임은 물론 제법규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손해 배상 및 책임은 물론 제 법규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손해 배상 및 책임을 진 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의 종료]

'공급자'가 본 비밀유지조건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시정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그 최고일로부터 3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시정이 없는 때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의 최고가 계약해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 12조 [분쟁해결]

본 비밀유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비밀유지조건의 각 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공급자가 체결한 하도급기본계약 제 49조 분쟁해결 조항에 따른다.

제 13조 [부정경쟁방지]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 '발주자 고객' 및 '발주자 고객의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잉여자재반납확약서

당사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로부터 상기 발주(계약) 건으로 지급받은 사급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할 것이며, 에스에프에이의 동의 없이 해당 PJT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 후 발생한 잉여자재 및 구리, 알루미늄 등 고가의 스크랩은 프로젝트 종료 후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구리, 알루미늄 등 스크랩이 소량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SFA 서명완료 E-DOCUMENT

▶ 잉여자재 접수처 구매그룹 자재관리

구매팀 최준섭 수석 031-379-1751

일 자 : 2024년 11월 07일

회사명 : (주)아이에스엘

확인자 : 오정석